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113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공단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 15.

판 결 선 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008년분 3,721,270원, 2009년분 2,982,570원, 2010년분 2,611,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피고의 지방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소재 [redacted]공단 [redacted]회관(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원고 [redacted]지사(아래에서는 '[redacted]지사'라 한다)와 [redacted]콜센터(아래에서는 '[redacted]콜센터'라 한다)가 동일 사업소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2008. 1.부터 2010. 12.까지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redacted]지사 종업원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고 [redacted]콜센터 종업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008년분 3,721,270원, 2009년분 2,982,570원, 2010년분 2,611,350원 합계 9,315,1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는 별개의 사업소임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는 별개의 사업소이고 [redacted]콜센터는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면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redacted]콜센터의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까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함

사업소 인정 기준에 관하여 각 사업소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며, 독립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소로 인정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고서 [redacted]콜센터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행에 반하는 과세처분으로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함

피고는 10년 동안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적이 없고, 2006. 4.경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피고의 선행행위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8, 19호증 및 현장검증조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조직 및 일반적인 업무분장의 내용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원고의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조직은 본부, 기금운용본부 등 이외에도 91개의 지사(지역본부 포함)와 5개의 콜센터로 구분되는데, 위 직제규정 및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지사(지역본부 포함)와 콜센터의 조직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제규정**

제4조(조직)

공단의 조직은 본부,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지사(지역본부 포함), 콜센터 및 장애심사센터로 구분한다.

제9조(지사)

① 공단은 지역적 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사를 두되, 지사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사는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1급지 또는 2급지로 구분하고, 1급지 중 권역별로 지역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사별 급지의 구분 및 지역 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센터)

공단은 연금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지사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콜센터를 두되, 콜센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제15조(업무분장)

본부 부서,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지사, 콜센터 및 장애심사센터의 업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시행규칙)

① 이 규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

업무분장(제15조 관련)

마. 지사

분장내용
<지역본부> 1. 권역내 지사의 홍보 총괄 및 교육 3. 권역내 지사장 회의 등 지사운영 4. 지사 성과관리 및 지사간 목표관리 5. 권역내 소송 및 공매업무 등 지사 지원업무 6. 권역내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7. 기타 예산·인력 등 자원조정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바. 콜센터

분장내용
1. 텔레서비스 등 고객상담 및 처리 2. 텔레서비스 위탁기관 관리 3.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조정 4. 지사 전산지원 관련 업무 5. 전산망 관리·운영 6. 텔레서비스 시스템 운영·관리 7. 인터넷 민원처리 및 VOC 운영

■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직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제3조(지사)

① 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사(지역본부 포함)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본부 및 소속 지사(콜센터 포함)는 별표 3과 같다.

③ 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에는 연금지급팀, 수급자지원팀, 고객상담팀, 고객지원팀, 행정지원팀 및 지사지원팀을 두며, 지사별 급지구분 및 하부조직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사장은 효율적인 지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자지원팀을 연금지원팀과 통합 운영할 수 있고, 고객상담팀을 연금지급팀, 수급자지원팀 또는 행정지원팀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지사지원팀을 행정지원팀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콜센터)

①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콜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②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콜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업무지원팀 및 텔레서비스팀을 둔다.

제8조(업무분장)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본부 각 실·단의 하부조직,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사의 하부조직, 제5조 제2항에 따른 콜센터의 하부조직 및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심사센터의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은 별표 9와 같다.

② 본부의 부서, 지사, 콜센터 및 장애심사센터(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부조직간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사지원팀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지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조 제1항 관련)

직제순위	지사명	위치	관할구역
54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별표 3]

지역본부 및 소속 지사(제3조 제2항 관련)

지역본부	지사명	소속지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광주 지역본부	광주	광주, 동광주, 북광주, 전주, 익산, 정읍, 남원, 순천, 여수, 목포, 해남, 제주, 광주콜센터

[별표 4]

지사별 급지구분 및 하부조직(제3조 제3항 관련)

구분	하부조직	지사명
1급지(55)	연금지급팀, 수급자지원팀, 고객상담팀, 고객지원팀, 행정지원팀, 지사지원팀	광주 등 7개
	연금지급팀, 수급자지원팀, 고객상담팀, 고객지원팀, 행정지원팀	동대문중랑 등 48개
2급지(36)	연금지급팀, 수급자지원팀, 고객상담팀, 고객지원팀, 행정지원팀	용산 등 36개

[별표 6]

콜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제1항 관련)

콜센터명	위치	관할구역
광주콜센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별표 9]

업무분장(제8조 관련)

나. 지사

하부조직	업무분장
행정지원팀	6. 연금회관 임대 및 용역업무 7. 연금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지사지원팀	1. 권역내 광역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권역내 유사기관의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3. 권역내 특화사업의 예산 집행 및 조정 4. 사업전략회의 등 지사장 학습조직 운영 5. 권역내 4급 이하 직원의 전보상신 6. 권역내 지사의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7. 권역내 지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부 8. HRD 교육 관련 업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9. 시·도 단위 기관 등에 대한 국민연금 설명회 10. 권역내 옴부즈만제도 운영 11. 권역내 지사 소송에 관한 업무 12. 권역내 지사의 사업실적 현황 분석 13. 권역내 지사 사무실 표준화 관련 업무 14. 기타 예산·인력 등 자원조정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다. 콜센터

하부조직	업무분장
업무지원팀	1. 센터내 행정지원업무 2. 전산망의 관리·운영 3. 지역권 대량 전산처리 업무 4. 본부·지사간 전산·통신망 연계 및 지원 5. 텔레서비스시스템 운영·관리 6. 센터내 경영혁신업무 7. 기타 타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텔레서비스팀	1. 텔레서비스 등 고객상담 2. 접수민원 처리 및 지사 이첩민원 관리 3. 권역내 인터넷 민원 처리 및 VOC운영 4. 전화상담 업무 위탁기관 관리 5. 도급운영에 따른 교육지원

2) 이 사건 건물의 이용 상황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이용 상황을 보면, [redacted]지사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문서고), 1층(민원실), 3층(업무부서 및 다목적회의실)을 이용하였고, [redacted] 콜센터는 4층(콜센터사무실, 콜센터 장비, 기계실, 창고), 6층(텔레서비스 상담실)을 이용하였으며, 지하 1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은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의 직원 이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였고, 3층에 있는 휴게실은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 직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나.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가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8. 10. 9. 선고 대법원2008두10188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는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가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용역 업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업무는 [redacted]지사 행정지원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9] 나항 행정지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팀 업무분장), [redacted]콜센터는 [redacted]지사의 총괄적인 관리 아래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휴게실 등 일부 시설물은 공동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② [redacted]콜센터는 [redacted]지사를 포함한 관할 구역 내 지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본부와 지사간 전산·통신망 연계 및 지원과 지사에서 이첩된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직제규정 제10조,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6], [별표 9]),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redacted]지사는 [redacted]지역본부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redacted]지역본부에 소속된 지사에 [redacted]콜센터가 포함되어 있다(직제규정 제4조, 제9조 제1항, 제2항,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그런데 지역본부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redacted]지사는 일반 지사와는 달리 소속 지사의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그 하부조직으로 지사지원팀을 두고서 [redacted]콜센터를 포함하여 권역내 지사장 회의 등 지사운영, 지사의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지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지사 소송 및 공매업무 등 지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므로(직제규정 [별표 3],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9] 나항 지사지원팀 업무분장), 그 범위 내에서 [redacted]콜센터는 광주지사의 관리 아래 있게 된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사업소 인정에 관한 관행이 성립하였다는 근거로 행정관청의 질의회신 내용(갑 제16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소 인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질의회신의 내용으로 사업소 인정에 관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기존에 [redacted]콜센터 종업원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는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소 인정 과정에서의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결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지방소득세 종업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분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관행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일반납세자에 대해서까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소 인정에 관한 관행이 없으므로, 지방소득세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redacted]콜센터 종업원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redacted] 지사와 [redacted]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소 인정 과정에서의 피고의 착오에 기인한 결과로 보이므로,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기존에 [redacted]콜센터 종업원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redacted]지사와 [redacted]콜센터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박성남

판사 신유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이나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179조의6(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제179조의7(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79조의8(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6조 (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제249조 (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4-21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51조 (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끝.